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67
----------	-----

2019년 9월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자 : 2019년 8월 07일
- 다.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 라. 상정결과 :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년 9월 2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관광체육국장 주용태)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시민체육 활동의 저변확대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여 상위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전반적 필요사항을 체육전문 단체인 서울특별시체육회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서울특별시체육회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규정이 '12년 3월에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가 민간위탁이 최초로 추진된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 17년 9개월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음.

다만 '13년 8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두 차례('13년 · '16년)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음.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28.>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3. 28.>
-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 3. 28.>

나. 위탁운영 현황

- 현재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는 20개 종목 21개팀으로 지도자 27명, 선수 141명이 활동 중이며 서울특별시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위탁사무는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 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출전, △선수의 체력보강을 위한 급식개선 및 효율적인 합숙소 운영, △우수선수 확보 및 성적에 따른 성과급 연봉제 운영, △운동경기부의 운영과 관련한 시설·장비의 관리, △시정홍보 및 기타 운영경기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음.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수탁기관	기간
1차	2002.01. ~ 2004.12.	서울특별시체육회	3년
2차	2005.01. ~ 2007.12.	서울특별시체육회	3년
3차	2008.01. ~ 2010.12.	서울특별시체육회	3년
4차	2011.01. ~ 2013.12.	서울특별시체육회	3년
5차	2014.01. ~ 2017.03.	서울특별시체육회	3년 3개월
6차	2017.04. ~ 2019.12.	서울특별시체육회	2년 9개월

다.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를 근거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하여 종합성과평가를 실시('19.4.)하여

조직 및 인력 운영,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사업계획 집행수준, 대회출전 성적, 지도점검 이행노력, 시민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76.24점을 받았으며,

서울시 조직담당관의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도 재계약이 적정('19.4.)하다는 결과를 받음.

- 그러나 상세히 살펴보면 위탁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먼저 동일한 성격의 사업인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와 서울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비교하여 볼 때, 복리후생성 급여지급 상 차별적 대우가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 차원에서 2개 위탁사무의 운영기준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예산을 교부·집행해야 할 것임.

<복리후생성 급여지급>

구분	기본급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우수선수 영입비	의무비	격려금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서울시장애인직장운동 경기부	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또한 연간 사업비 집행률은 '17년 93.9%에서 '18년 99.51%로 양호한 편이나 분기별 예산계획 및 집행률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됨.

<최근3년간 예·결산현황>

구분	예산(백만원)	결산(백만원)	집행률(%)
2017년	13,982	13,129	93.9
2018년	13,932	13,864	99.51
2019년	14,162	-	

- 한편 서울시체육회는 우수선수육성 발굴 및 비인기취약종목 활성화 지원사업 조직으로 경기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해야 하며, 이러한 업무성과 및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원 채용 시 엘리트선수 경력 및 체육분야 전공자를 적극적으로 우대하여 체육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노력이 필요함.

직장운동경기부는 2019년 전국체전 및 2020년 도쿄올림픽을 대비하며 매년 우수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체 사업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증가('17년 66.61%→'18년 67.97%→'19년 74.30%)하는 추세임.

선수에 대한 관리운영이 위탁사무의 주요한 사업범위이므로 인건비의 비중을 높이는 것에 공감하나 운동시설사용료, 대회 및 전지훈련, 의무비 등 연습활동에 필요한 기본경비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는 바임.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채택하고 있는 바, 전문 경영 노하우와 운영 경험이 풍부한 서울시체육회에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0년 1월부터 시행되어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어, 변화를 앞둔 서울시체육회가 동 위탁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추진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67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시민체육 활동의 저변확대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여 상위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전반적 필요사항을 체육전문 단체인 서울특별시체육회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 개요

- 사업명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운영현황 : 20개종목 21개팀 168명(지도자 27, 선수141)

나. 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20.1.1.~2022.12.31.)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 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출전
 - 선수의 체력보강을 위한 급식개선 및 효율적인 합숙소 운영

- 우수선수 확보 및 성적에 따른 성과급 연봉제 운영
- 운동경기부의 운영과 관련한 시설·장비의 관리
- 시정홍보 및 기타 운영경기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 소요예산(안) : 15,193,571천원(2020년 기준)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 및 제12조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심의('19.4.9)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을 위한 2020년 서울특별시 직장운동 경기부 사업계획('19.6.20)

○ 민간위탁 추진현황

- 2002.01. ~ 2004.12. : 서울특별시체육회 운영위탁(1차, 3년)
- 2005.01. ~ 2007.12. : 서울특별시체육회 운영위탁(2차, 3년)
- 2008.01. ~ 2010.12. : 서울특별시체육회 운영위탁(3차, 3년)
- 2011.01. ~ 2013.12. : 서울특별시체육회 운영위탁(4차, 3년)
- 2014.01. ~ 2017.03. : 서울시특별체육회 운영위탁(5차, 3년 3개월)
- 2017.04. ~ 2019.12. : 서울시특별체육회 운영위탁(6차, 2년 9개월)

○ 민간위탁 재계약 사전절차 이행여부

- 2019. 04.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76.24점)
- 2019. 07.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적정, 조직담당관)
- 2019. 08.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 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경기부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발전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시에 경기부와 서울특별시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둔다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6조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18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한다

부칙<제6567호, 2017. 7. 13.>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0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체육정책과 전문체육팀 김동인 (☎2133-2687)